사 업 명

(1) 에너지바우처(5146-30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| 구분 | 회계 | 소관 | 실국(기관) | 계정 | 분야 | 부문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코드 |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| 산업통상자원부 | 에너지정책관 | 투자계정 | 110 | 115 |
| 명칭 | 산업·중소기업  및에너지 | 에너지및자원개발 |

| 구분 | 프로그램 | 단위사업 | 세부사업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코드 | 5100 | 5146 | 301 |
| 명칭 | 에너지자원정책 | 에너지복지지원 | 에너지바우처 |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Ⅱ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| 신규 |  | 계속 | 완료예비타당성실시여부 | 총사업비관리대상 | 총액계상  예산사업 | 사업소관 변경정보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2023예산 시 소관 |
|  | ○ |  | ○ |  |  |  |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| 직접 | 출자 | 출연 | 보조 | 융자 | 국고보조율(%) | 융자율 (%)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 |  | ○ |  | 100 |  |

□ 사업 담당자

| 사업명 | 구분 | | | |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에너지  바우처 | 산업통상자원부 | 실·국·과(팀)에너지정책관에너지효율지원팀 | 과 장  박은표  044)203-5160 | 사무관  이상은  044)203-5161 | 주무관  이수연  044)203-5162 |
| 사업시행주체 | 한국에너지공단 | 에너지복지실 | 권용출 팀장 | 052)920-0541 |
| 연탄쿠폰  내역사업 | 산업통상자원부 | 실·국·과(팀)자원산업정책국  석탄산업과 | 과 장  양정식  044)203-5260 | 사무관  박상욱  044)203-5261 | 주무관 |
| 사업시행주체 | 한국광해광업공단 | 석‧연탄산업지원실 | 이정현 과장 | 033)736-5743 |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| 사업명 | 2022년  결산 | 2023년 예산  본예산(A) | 2024년 | | 증감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정부안 | 확정(B) | (B-A) | (B-A)/A |
| 에너지바우처 | 230,556 | 190,963 | 685,606 | 685,606 | 494,643 | 259.0 |

□ 기능별(내역사업별), 목별 예산안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 | 2022 | | | | | 2023(’23.12월말) | | | | | | | 2024예산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예산액(추경 | 예산  ) 현액 | 집행액[실집  행액] | 이월액 |  | 불용액 | 본예산예산현액 | 집행액  [실집  행액] | 전년도 이월액 제외 | | 이월  예상액 | 불용  예상액 |
| 예산  현액 | 집행액    [실집  행액] |
| ○ 기능별 분류(합계․하절기바우처  ․동절기바우처  ․연탄쿠폰  ․등유바우처  ․등유‧LPG지원금민 간 경 상 보 조․사업운영비 | ) 230,55647,143156,26723,600  1,6741,872 | 230,556  47,143  156,267  23,600 1,674  1,872  - - | 230,556[218,062]47,143[44,301]156,267[147,975]23,600[22,304]  1,674[1,674]1,872[1,808]  - | - | - - - - - - - - - - - -  - | 190,963  36,851  129,656  21,712  1,395  1,349  - | 323,996  48,805  171,337  23,854  1,551  3,485  74,964 | 323,996[279,508]    48,805[42,335]    171,337[158,869]    23,854[15,842]    1,551  [522]  3,485  [1,086]  74,964[60,854] | 323,996  48,805  171,337    23,854  1,551    3,485  74,964 | 323,996[279,508]  48,805[42,335]  171,337[158,869]23,854[15,842]  1,551[522]3,485[1,086]  74,964[60,854] |  | - - - - - - - - - -  - - - - | 685,606  60,950  600,521  21,240  1,023  1,872  - |
| ○ 비목별 분류(합계  ․  (320-01) | ) 230,556 230,556 | 230,556  230,556 | 230,556[218,062]  230,556[218,042] |  |  | 190,963190,963 | 323,996  323,996 | 323,996[279,508]    323,996[279,508] | 323,996  323,996 | 323,996[279,508]  323,996[279,508] |  | - - - - | 685,606  685,606 |

○기능·비목별 분류(합계) 230,556 230,556 230,556

[218,062] - - 190,963 323,996 323,996

[279,508] 323,996 323,996

[279,508] - - 685,606

․하절기바우처 47,143 47,143 47,143

[44,301] - - 36,851 48,805 48,805

[42,335] 48,805 48,805

[42,335] - - 60,950

(320-01) 47,143 47,143 47,143

[44,301] - - 36,851 48,805 48,805

- 민간경상보조

․동절기바우처 156,267 156,267 156,267

[42,335] 48,805 48,805

[42,335] - - 60,950

[147,975] - - 129,656 171,337 171,337

[158,869] 171,337 171,337

[158,869] - - 600,521

(320-01) 156,267 156,267 156,267

[147,975] - - 129,656 171,337 171,337

- 민간경상보조

․연탄쿠폰 23,600 23,600 23,600

[158,869] 171,337 171,337

[158,869] - - 600,521

[22,304] - - 21,712 23,854 23,854

[15,842] 23,854 23,854

[15,842] - - 21,240

|  | 2022 | | | | | 2023(’23.12월말) | | | | | | | 2024예산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예산액(추경 | 예산  ) 현액 | 집행액[실집  행액] | 이월액 |  | 불용액 | 본예산예산현액 | 집행액  [실집  행액] | 전년도 이월액 제외 | | 이월  예상액 | 불용  예상액 |
| 예산  현액 | 집행액    [실집  행액] |
| - 민간경상보조(320-01)  ․등유바우처  - 민간경상보조(320-01)  ․사업운영비  - 민간경상보조(320-01)  ․등유‧LPG지원금  - 민간경상보조(320-01) | 23,6001,6741,6741,8721,872 | 23,600  1,674  1,674  1,872  1,872  - -- - | 23,600[22,304]1,674[1,674]  1,674[1,674]1,872[1,808]  1,872[1,808]  -  - | -  - | - - - - - - - - - -  -  - | 21,712  1,395  1,395  1,349  1,349  -  - | 23,854  1,551  1,551  3,485  3,485  74,964  74,964 | 23,854[15,842]    1,551  [522]  1,551  [522]  3,485  [1,086]  3,485  [1,086]  74,964[60,854]    74,964[60,854] | 23,854  1,551  1,551    3,485    3,485  74,964  74,964 | 23,854[15,842]  1,551[522]  1,551[522]3,485[1,086]3,485[1,086]  74,964[60,854]  74,964[60,854] |  | - - - - - -  - -  - - - - - - | 21,240  1,023  1,023  1,872  1,872  -  - |

\* 에너지바우처는 동·하절기(당해연도 7월~익년도 4월)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’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(~’24.4월)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 :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전기·가스·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
- (하절기바우처) 하절기 냉방 등을 위한 전기요금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원

- (동절기바우처) 동절기 난방 등을 위한 연탄, 등유, LPG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연료비를 가상카드,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

- (연탄쿠폰)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대상 가구에 연탄 구입 비용을 연탄쿠폰 형태로 지원

- (등유바우처)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대상 가구에 동절기 난방을 위한 난방용 등유 구입비용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

- 에너지법 제16조의2, 제16조의3 및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

| **에너지법 제16조의2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)**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 **에너지법 제16조의3(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)**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. |
| --- |

② 추진경위

-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(43번)로 포함되어 발표(’13.5) -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(’15.7) - 사회보장위원회(총리 주재)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(’15.8)

-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’15.11~‘16.1월 신청‧접수, ’15.12~‘16.3월 사용) \* ‘15년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대상자에게 환급형바우처 신청(’16.5월)‧지급(’16.6월)

-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’16.11~‘17.1월 신청‧접수, ’16.12~‘17.4월 사용) - 정부 국정과제(37번\*)에 포함(’17.7)

\* (에너지바우처) ’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세대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

-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‘17.10~’18.1월 신청·접수, ‘17.11~’18.5월 사용) -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추가(’18.6) -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’18.10~’19.1월 신청·접수, ‘18.11~’19.5월 사용) -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(’19.7)

-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’19.5~’19.9월 신청·접수, ‘19.7~’20.4월 사용) -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‘20.5~’20.12월 신청·접수, ‘20.7~’21.4월 사용) -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‘21.5~’21.12월 신청·접수, ‘21.7~’22.4월 사용) - 대통령직인수위「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\*」발표(‘22.4)

\* (따뜻한 에너지 전환)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(年 2,500kWh 이상) 지원-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’22.5~‘23.2월 신청·접수, ’22.7~‘23.4월 사용) -「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(국무회의 의결)」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\* 발표(’22.7)

\* (에너지바우처)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-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(‘23.5~’23.12월 신청·접수, ‘23.7~’24.4월 사용)

□ 주요내용

① 사업규모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- 사업기간 : ’15년 ~ 계속

-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(예산액기준,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)

| 연도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사업비 | 167,517 | 143,605 | 230,556 | 323,996 | 685,606 |

- 기타 : ’24년 대상가구 115.0만 세대에 평균 36.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

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민간경상보조
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광해광업공단 - 사업 수혜자

ㆍ(동·하절기바우처) 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‧의료·주거·교육급여, 중위소득 50% 이하) 수급세대 중,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·희귀‧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,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ㆍ(연탄쿠폰)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소외계층

ㆍ(등유바우처) 등유를 사용하는 생계‧의료급여(중위소득 40%이하) 수급세대 중, 한부모‧ 소년소녀가정세대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․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| 내역사업명 |  | 구분 피보조․피출연 등 기관명 | 지원 금액  (2024예산) | 지원  비율(%) | 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하절기바우처 |  |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| 60,950 | 100 | 보조금법 제9조 |
| 동절기바우처 |  |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| 600,521 | 100 | 보조금법 제9조 |
| 연탄쿠폰 |  | 보조 한국광해광업공단 | 21,240 | 100 | 보조금법 제9조 |
| 등유바우처 |  |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| 1,023 | 100 | 보조금법 제9조 |
| 사업운영비 |  |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| 1,872 | 100 | 보조금법 제9조 |

3) ’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

① 하절기바우처 : (‘23) 36,851백만원 → (’24) 60,950백만원(+24,099백만원)

\* 지원대상 확대(생계·의료→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- (산출) 85.7만세대 x 4.3만원(‘23년) → 115.0만세대 × 5.3만원(’24년)

② 동절기바우처 : (‘23) 129,656백만원 → (’24) 600,521백만원(+470,865백만원)

\* 지원대상 증가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 확대를 고려한 증액 - (산출) 85.3만 세대 x 15.2만원(‘23년) → ① ‘23년 동절기 지원확대 : 113.1만 세대 x 30.4만원 x 70%, ② ‘24년 동절기 지원 : 114.6만 세대 x 31.4만원(’24년)

③ 연탄쿠폰 : (‘23) 21,712백만원 → (’24) 21,240백만원(△472백만원)

\* 연탄 소비가구 감소 추세에 따른 감액

- (산출) 4.5만 세대 x 472,000원 = 21,240백만원

④ 등유바우처 : (‘23) 1,395백만원 → (’24) 1,023백만원(△372백만원)

\* 등유 소비가구 감소 추세에 따른 감액

- (산출) 0.33만 세대 x 310,000원 = 1,023백만원

⑤ 사업운영비 : (‘23) 1,349백만원 → (’24) 1,872백만원(+523백만원)

\*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, 시스템 고도화,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- (산출) 에너지복지 홍보(448백만원), 시스템 고도화(705백만원), 콜센터 운영(502.7백만원), 패널조사(131.7백만원), 전달체계 구축(34.6백만원),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(50백만원)

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

| ’23년 예산 | | ’24년 예산 |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예산 | 산출내역 | 예산 | 산출내역 |
| 190,963 | **○** 민간경상보조(320-01**) : 190,963백만원**  가. 하절기바우처 (36,851백만원)  ㆍ 85.7만 세대 × 4.3만원 = 36,851백만원  나. 동절기바우처 (129,656백만원)  ㆍ 85.3만 세대 × 15.2만원 = 129,656백만원  다. 연탄쿠폰 (21,712백만원)  ㆍ 4.6만 세대 × 47.2만원 = 21,712백만원  라. 등유바우처 (1,395백만원)  ㆍ 0.45만 세대 × 31만원 = 1,395백만원  마. 사업운영비 (1,349백만원)  ㆍ 에너지복지 홍보: 328백만원  ㆍ 시스템 고도화 : 520백만원  ㆍ 콜센터 운영 : 280백만원  ㆍ 패널조사 : 133.5백만원 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: 37.5백만원 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: 50백만원 | 685,606 | **○** 민간경상보조(320-01**) : 685,606백만원**  가. 하절기바우처 (60,950백만원)  ㆍ 115.0만 세대 × 5.3만원 × 100% = 60,950백만원  나. 동절기바우처 (600,521백만원)  ㆍ (’23확대) 113.1만 세대 × 30.4만원 × 70% = 240,677백만원ㆍ (’24지원) 114.6만 세대 × 31.4만원 = 359,844백만원  다. 연탄쿠폰 (21,240백만원)  ㆍ 4.5만 세대 × 47.2만원 = 21,240백만원  라. 등유바우처 (1,023백만원)  ㆍ 0.33만 세대 × 31만원 = 1,023백만원  마. 사업운영비 (1,872백만원)  ㆍ 에너지복지 홍보: 448백만원  ㆍ 시스템 고도화 : 705백만원  ㆍ 콜센터 운영 : 502.7백만원  ㆍ 패널조사 : 131.7백만원 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: 34.6백만원 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: 50백만원 |

4) 사업효과

□ 사업영향, 산출물 성과지표 등

① ’20~’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

| 성과지표 | 구분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 ‘24목표치  산출근거 | 측정산식  (또는 측정방법) | 자료수집방법(또는 자료출처)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에너지바우처지원세대수  (단위: 만세대) | 목표 | 65.6 | 81.7 | 112.3 | 108.2 | 109.7 | ’24년 대상세대수(115만 세대)×최근    5개년 발급률  가중평균(95.4%) | 차세대  행복e음에서    지원세대수    취합·추출 | 지자체 등 취합 |
| 실적 | 66.1 | 77.7 | 113.3 |  | - - |
| 달성도 | 100.7% |  | 95.1% | 100.9% | - - |
| 에너지바우처수급자 만족도(단위: 점) | 목표 | 81.5 | 82.9 | 83.3 | 83.9 | 84.5 | 최근 3년(’20-’22)  지원 실적의 반영  평균 증가율 |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 만점으로 환산 | 대상세대  설문조사 |
| 실적 | 82.1 | 82.9 | 83.3 | - | - |
| 달성도 | 100.7% |  | 100.0% | 100.0% | - - |

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

| 2020 | -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 시행(344만 세대 지원) - 외국인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(‘20.9월) |
| --- | --- |
| 2021 | -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인 외국인 포함-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급구간 확대(3단계→4단계)  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.2%인상(9천원↑, 동절기 평균 지원금액 10.9만원→11.8만원, ‘21.12월) |
| 2022 | 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세대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(‘22.5월)  -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·추위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·추위민감계층까지 한시적 확대(’22.5월 2차추경) -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4.5만원 인상(하절기 평균 0.9만원→4만원, 동절기 평균 11.8만원→13.2만원, ‘22.5월 2차추경)  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1.3만원 인상(동절기 평균 지원금액 13.2만원→14.5만원, ’22.10월)-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총 15.9만원(0.7만원(’23.1월), 15.2만원(’23.2월)) 한시적 인상(14.5만원→30.4만원) |
| 2023 | -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주거·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·추위민감계층까지 영구적확대(’23.5월)  -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.3만원 인상(하절기 평균 4만원→4.3만원) |

·

③ 향후(’24년도 이후) 기대효과 :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,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(약 115만 세대, 세대당 평균 36.7만원 내외)

5)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

□ 예비타당성 조사

ㅇ 보고서명 :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(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) ㅇ 조사기관 : KDI(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)

ㅇ 조사일자 : 2014. 08월

ㅇ 조사결과 : AHP 평가 결과, B/C ratio가 0.539로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6)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: 해당없음

7) 사업 집행절차

| **< 동·하절기 에너지바우처 >**  사업 결과보고  신청‧접수  지급 결정‧통지  바우처 발급  바우처 사용  및 정산  **⇨**  **⇨**  **⇨**  **⇨**  읍면동  시군구  에너지공단  → 수급세대 수급세대 한국에너지공단  행정복지센터  → 수급세대  **< 연탄쿠폰 >** 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확정통보  연탄쿠폰 제작  연탄쿠폰 배부  광해공단 → 광역시도  **⇨**  **⇨**  **⇨**  전국 17개 광역시도 광해공단 → 광역시도 연탄쿠폰, 안내장 등  → 시군구 → 읍면동 →  수급자  사업결과 보고 및  쿠폰사용  쿠폰대금 청구  쿠폰대금 지급  사업비 정산·반납  **⇨**  **⇨**  **⇨**  **⇨**  수급자 →  연탄수송업자 →  광해공단 → 연탄공장  → 연탄수송업자 광해공단 → 산업부  연탄수송업자  연탄공장 → 공단  **< 등유바우처 >**  신청자 명단  대상자  등유바우처  카드 신청 ‧  신청‧접수  검토  선정‧확정통보  발급 통지 및 안내  발급  **⇨**  **⇨**  **⇨**  **⇨**  행정복지센터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기초지자체 대상세대/카드사업자읍면동 |
| --- |

8)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

(단위: 백만원)

| 중기  재정계획 | ’22 | ’23 | ’24 | ’25 | ’26 | ’27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’22~’26 | 230,556 | 185,739 | 232,427 | 304,986 | 418,402 |  |
| ’23~’27 |  | 190,963 | 685,606 | 441,694 | 457,467 | 474,481 |

9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, 문제점 및 대책

| □ ‘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-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였음(‘22.5월)  □ ‘21년 결산 지적사항  ㅇ 수급자 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선정기준 등의 변경계획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·지자체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 -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대상 변동 등이 예산편성시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 |
| --- |

10)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

| ㅇ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|
| --- |

11)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

| ㅇ 재정사업자율평가(’22년) : 보통(78.1점)  ㅇ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(‘21년) : 지속 지원(87.8점) |
| --- |

12) 부처 건의사항 : 해당없음

다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1) 결산표

□ 부처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, %)

| 연도 | 예산액 | | | 전년도이월액 | 이․전용등 | 예비비 | 예산  현액(B) | 집행액  (C) | 집행률 (C/A) | 집행률(C/B) | 다음연도  이월액 | 불용액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본예산 | 추경  증감액 | 추경(A) |
| 2020 | 167,517 |  | - 167,517 |  | - - | - | 167,517 | 157,265 | 93.9 | 93.9 |  | - 10,252 |
| 2021 | 113,909 | 21,796 | 135,705 |  | - 7,900 |  | - 143,605 | 143,605 | 105.8 | 100.0 |  | - - |
| 2022 | 138,939 | 91,617 | 230,556 |  | - - | - | 230,556 | 230,556 | 100.0 | 100.0 |  | - - |
| 2023 | 190,963 |  | - 190,963 |  | - - | 133,033 | 323,996 | 323,996 | 169.7 | 100.0 |  | - - |

□ 출연·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

(단위: 백만원, %)

| 구분 | 부처 | | | 사업시행주체(피출연․피보조 기관 등) | | | | | |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예산액 | | 집행액 |  | 교부액전년도이월액 | 교부  현액 | 집행액  (B) | 이월액 |  | 불용액실집행률(B/A) |
| 본예산 | 추경(A) |
| 2020 | 167,517 | 167,517 | 157,265 | 157,265 |  | - 157,265 | 139,128 |  | - 10,252 | 83.1 |
| 2021 | 113,909 | 135,705 | 143,605 | 143,605 |  | - 143,605 | 104,664 |  | - - | 72.9 |
| 2022 | 138,939 | 230,556 | 230,556 | 230,556 |  | - 230,556 | 218,062 |  | - - | 94.6 |
| 2023. 12월기준 | 190,963 | 190,963 | 323,996 | 323,996 |  | - 323,996 | 279,508 |  | - - | 86.3 |

\* 에너지바우처는 동·하절기(당해연도 7월~익년도 4월)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’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(~’24.4월)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

2) 주요 결산사항

□ 2020년~2023년 결산사항

| 2020 | - 불용 사유 : ‘20년 하절기 이상기온에 따른 전기사용량 하락으로,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액 감소 |
| --- | --- |
| 2021 | - 이·전용 등 사유 :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상승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한시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7,900백만원을 전용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.2%인상에 활용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이용 부담을 완화(제48차 비상경제중대본, ‘21.11월) |
| 2022 | - 추경 편성 사유 :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·난방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‘22년 2차추경을 통해 91,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|
| 2023 | - 예비비 편성 사유 :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특별대책(’23.1.26, 2.15.)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100,000백만원 배정을 통한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(15.2→30.4만원) 지원 |

□ 2023년 이․전용 등 세부내역 : 해당사항 없음 □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내역사업 | 목 | 세목 | 금액 | 예비비 배정 사유(날짜)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동절기바우처 | 민간경상보조 | 민간경상보조 | 133,033 |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특별대책에 따른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 지원    (’23.2.23./10.25.) |
| 합 계 | | | 133,033 | - |

라. 기타 추가자료 : 해당없음